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안내

2016. 7.



신 용 회 복 위 원 회
Credit Counseling & Recovery Service

I

「신용회복지원협약」이란?

-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은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간 자율협약으로 '02년 제정되었으며,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무조정을 지원에 필요한 채무조정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
- '16. 6월말 현재 3,671개 채권금융회사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동안 약 146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
- 한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동 시행령은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협약 체결을 의무화 함

II

협약 주요 내용

- 협약은 총 9개 장 27개 조항으로 구성

구성	내용
▪ 제1장 총 칙(제1조~제2조) ▪ 제2장 신용회복지원신청(제3조~제10조) ▪ 제3장 신용회복지원(제11조~제13조) ▪ 제4장 신용회복지원 등의 효력(제14조~제23조) ▪ 제5장 (삭제) ▪ 제6장 (삭제) ▪ 제7장 다중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 (제23조의11~제23조의14) ▪ 제8장 중소기업인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제23조의15~제23조의18) ▪ 제9장 중소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지원(제23조의19~제23조의23) ▪ 보 칙(제24조~제27조)	- 협약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신청대상 및 방법과 신청의 효력 - 신용회복지원 내용과 기준 - 신용회복지원의 효력과 효력의 상실 기준, 신용정보의 관리에 관한 내용 - 사전채무조정 대상 및 지원내용 -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지원 내용 -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및 재창업자금 지원에 관한 내용 - 제제금 부과 및 협약의 개정과 폐지에 관한 내용

※[붙임3] 「신용회복지원협약」 참조

III

협약은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가?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협약 체결 대상 규정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이하 '법,' 16. 9. 23. 시행)은 협약 체결 대상 금융회사를 규정

- (법 시행 전) 협약 체결은 채권금융회사의 자율
- (법 시행 후) 법 제75조에 따른 기관은 위원회가 요청하면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개인채권을 보유한 자산유동화회사,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 등도 협약 체결 의무대상임*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 예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진흥원
 2. 금융회사
 3.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로서 위원회가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③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제재 사항

- ☐ 금융위원회는 협약 체결 대상 금융회사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법 제86조에 따라 당해 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75조제3항을 위반하여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3.~6.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IV 협약을 체결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1. 채권의 회수가능성 제고

- ☐ 연체자의 경우 평균 7~8개 금융회사에 평균 25백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전체 채권자의 지원 없이 채무자 자력으로는 채무상환이 불가능
- 위원회는 다중채무를 일괄적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하여 채무자의 상환의지를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높아짐

※ 위원회를 통해 분할회수를 받는 것이 채권금융회사 자체회수 또는 회수위임의
 경우보다 회수비용이 절감

2. 대부업권 이미지 제고

- ☐ 협약 체결로 인한 추심활동 감소, 서민금융정책 참여 등으로 고착화된 대부업권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

3. 개인회생·파산 쏠림현상 해소

- ☐ 대부업체 채무를 보유한 채무자는 연체가 발생하면 개인워크아웃 신청보다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선호

- 무분별한 개인회생·파산 쏠림현상은 금융회사의 손실부담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증가의 원인

→ 대부업체가 협약 체결을 하는 경우 개인워크아웃의 실효성이 제고되어 개인회생·파산 쏠림현상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참고) 대부업체 채무보유자의 채무자 구제제도 신청 현황

- ☐ 분석대상 : '13. 7. ~ '14. 6. 특정 대부업체 신규대출 발생고객 중 '15. 12월 말 현재 채무자 구제제도 이용 현황

(단위 : 명, 천원, 일, 세)

구 분	채무자수	비대부채무	대부채무	합계	경과기간	연령
전체	119,680	31,126	4,086	35,212	-	40.7
개인워크아웃	1,913	30,539	3,720	34,259	450	40.9
개인파산	329	35,230	4,008	39,238	488	46.7
개인회생	5,595	39,140	3,959	43,099	455	39.9

주) 1. 비대부채무, 대부채무, 합계, 경과기간, 연령은 모두 채무자 평균

2. 비대부채무 : 대부업 신규대출 시 기 보유 중인 대부업을 제외한 금융 대출금액의 1인당 평균금액

3. 대부채무 : 대부업 신규대출 시 신규 대부 대출금액과 기 보유 대부대출 잔액 합계의 1인당 평균금액

4. 경과기간 : “신용회복 확정일 또는 면책일 - 변제계획인기일 - 최근(대부 신규) 대출일자 + 1”의 평균일수

V

협약 체결 방법

- ☐ 협약 체결 신청서를 위원회에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면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협약 체결 완료

※ 법 시행일 '16. 9. 23. 이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체결의 효력은 법 시행 후에 자동 승계 됨

<구비 서류>

구비서류	부수	비고
협약가입신청서	1부	위원회 양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법원 등기소 발급
법인 인감증명서(원본)	1부	법원 등기소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세무서 발급
변제금 입금통장 사본(원본대조필)	1부	
회원기관업무시스템 대표IP 신고서	1부	위원회 양식

* 신용회복위원회 회원기관업무시스템(<http://edi.ccrs.or.kr>) 로그인 화면의 '신청서식 안내'를 클릭하면 위원회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음

- ☐ (담당부서)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기획부 02-6362-0279~80
- ☐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WISE TOWER 10층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기획부

- 붙 임 : 1.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 제도 개요
2. 채무자구제제도 비교
3. 「신용회복지원협약」

[붙임 1]

1 개인워크아웃제도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

지원대상

-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채무자

지원내용

- ☐ 분할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의 기간 내에서 채무를 분할상환
 - ☐ 채무감면(최대 감면 폭)
 - 이자(연체)채권 전액 감면, 상각채권은 원금의 30~60%*까지 감면
- *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 등)의 경우 상각채권에 한해 60~90%까지 감면
- ☐ 변제 유예
 -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유예 기간중 이자율은 연 2% 이내에서 누적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지원자는 4년

일시적으로 상환불능에 처한 개인채무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로의 전락을 방지

지원대상

-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① 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채무자
- ② 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 이하일 경우 연소득 40백만원 이하, 최근 누적연체 일수 30일 이상인 채무자
- ③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총채무액의 30/100 이하인 채무자
- ④ 연간 채무상환액이 연간총소득액(세전기준) 대비 30% 이상인 채무자
- ⑤ 보유자산가액(부동산)이 10억원 미만인 채무자

지원내용

-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원금감면 없음)
- ☐ 상환기간 연장 : 무담보채권 10년, 담보채권 20년 범위 내
- ☐ 변제 유예 : 최장 1년(6개월 단위, 유예기간중 이자율 연 3%)
- ☐ 이자율 조정 : 채권금융회사 약정이자율의 50%를 적용하여 상환기간 중 납입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

구 분	신용회복위원회		법적 구제제도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시행시기	2009. 4. 13.	2002. 10. 1.	2004. 9. 23.	1962. 1. 20.
대상채권	협약가입 금융기관 (‘16. 6월말기준 3,671개)	좌 동	제한 없음 (사채 포함)	제한 없음 (사채 포함)
채무조정 신청채무 범위	15억원(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하 3개월 미만 연체채권	15억원(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하 3개월 이상 연체채권	무담보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 이하	제한 없음
채무조정 수준	• 연체이자 감면 • 약정이율의 50% 인하 (최저 5%) • 10년 이내 분할상환 * 원금 감면 없음	• 이자채권 전액감면 •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60%까지 (사회소외계층60~90%) 원금 감면 • 8년(10년) 이내 분할 상환 * 평균 원금감면율 약 20%	• 변제액이 청산가치 보다 클 것 • 변제기간 5년 이내 * 원금의 약 60~70% 감면	청산 후 면책 * 채무 전액 탕감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법적효력	채권채무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 변제완료 시 소멸	채권채무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 변제완료 시 소멸	판결효력 변제 완료시 면책	판결효력 청산 후 면책
한국신용정보원 ‘연체 등’ 정보 해제여부	미등록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연체 등’ 정보 해제 공공기록정보 “1101” 등록 (2년경과시 삭제)	변제계획 인가시 ‘연체 등’ 정보 해제 공공기록정보 “1301” 등록 (5년경과시 삭제)	면책결정시 ‘연체 등’ 정보 해제 공공기록정보 “1201” 등록 (5년경과시 삭제)

[붙임 3]

신용회복지원협약



신 용 회 복 위 원 회
Credit Counseling & Recovery Service

신용회복지원협약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관에 따라 회원 금융기관이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그 경제적 회생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신용회복지원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3.30.)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란 다음의 각목을 말한다.(개정 2010.3.29.)
 -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본 협약에 가입한 기관
 - 다. 가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자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기관
2. ‘채권’이란 금융기관이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을 말한다.
 - 가. 대출금
 - 나. 신용카드대금(현금서비스 포함)
 - 다. 할부금융채권
 - 라. 보증채권(신설 2004.5.20.)
 -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채권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채권(개정 2004.5.20.)
3. (삭제 2005.3.30.)
4. ‘채무자’란 제1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을 말한다.
5. ‘신용회복지원’이란 채권 원리금의 상환유예, 채무감면,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등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회복 및 파산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채무조정 등을 말한다.
6. ‘총채권(채무)액’이란 원금, 이자, 연체이자, 지연배상금 및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한다.

7. '회원기관'이란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본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8. '채권기관'이란 제7호에서 정한 회원기관 중 신청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회원기관을 말한다.
9. '최저생계비'란 채무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신설 2016. 4. 1.)

제2장 신용회복지원신청

제3조(신청대상) ① 본 협약에 의하여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채권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또는 채무상황이 기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3.30.)(개정 2013.6.10.)(개정 2016. 4. 1.)

1. 본 협약에 의거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신용회복지원효력 상실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또는 변제완료자로서 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9.8.)
2. 본 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반복적으로 하는 자
3.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자
4. 어음·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5.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6. 협약외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이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인 자
7. 최근의 대출실적이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범위 이상으로 과다한 자
8.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9.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10. 기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최저생계비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다음 각 목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을 말한다.(항 신설 2016. 4. 1.)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나.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2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하는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의 결과

제4조(신청방법) 신용회복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신청서 및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비용) 채무자는 신청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접수통지 및 채권신고 등) ①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신고 및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채권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당해 채무자에 대한 총채권액, 담보 및 보증에 관한 사항,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등 제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채권기관은 동 기간 내에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2주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도록 하며, 채무자가 이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7조(신청의 효력) ①채권기관은 그 설립근거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서 신청사실을 통지 받은 이후부터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등에 대한 채권추심의뢰, 가압류·가처분을 비롯한 추가적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의 신청, 소송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채무관련인의 책임재산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를 제외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05.3.30.)

②채권기관은 신청사실을 통지 받은 이후에는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 등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및 소송행위 등이 중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신청서 접수 이후에 채권기관 이외의 자에 의하여 경매의 신청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채권기관은 동 절차에 참가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채권기관이 채권 전액 또는 일부를 변제 받은 경우, 심의위원회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재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채권기관은 제6조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채무자가 임의변제 요청을 하더라도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제8조(채권기관과 보증기관과의 관계) ①채무자에 대하여 보증을 한 금융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은 채권기관이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 받기 이전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채권기관은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 받은 후에는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신용회복지원이 제9조 제3항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보증기관은 채무자가 확정된 신용회복지원 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증서 등을 채권기관에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 및 결정 등) ①심의위원회는 제6조 제2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용회복지원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이를 채무자 및 채권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의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기관에 의결사항을 통지하고, 채권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결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의결은 무담보채권액 1/2 초과 동의와 담보채권액 1/2 초과 동의로 확정되며, 제2항의 기간 내에 동의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채권기관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중앙회 또는 연합회 등이 설치되어 있는 채권기관은 그 의결권을 각자 행사하거나 중앙회 또는 연합회 등에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13.6.10)

④채권기관의 부동의로 부결된 경우에 심의위원회는 채무자 및 채권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변제계획 등을 재조정 한 후, 신용회복지원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 의한 채권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자금 지원 신청자의 경우 제①항 내지 제④항의 신용회복지원 심사 및 결정 등은 재창업지원위원회가 담당한다.(신설 2012.4.2.)

제10조(채무조정권한 위임 및 채무조정) ①채권기관은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 채권기관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으로 한다.

②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채무자는 확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정한 '채무조정합의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함으로써 제1항에 의해 채권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권한을 위임 받은 위원회와 채무조정을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기관은 채무조정으로 인한 신규보증서 발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에게 추가적으로 별도의 채권보전절차 및 약정서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신용회복지원

제11조(신용회복지원의 내용)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체적인 신용회복지원 내용을 적용한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한다.

1. 상환기간 연장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권은 최장 8년의 기간까지, 담보채권은 3년 이내 거치후 최장 2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잔존상환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채권은 당해 채권의 잔존상환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 분할상환

제1호의 기간 내에서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3. 이자율 조정

제1호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다.

4. 변제기 유예

제1호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1.6.1.)

5. 채무감면

제1호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이자채권은 전액, 원금채권은 상각채권에 한하여 최대 30~60%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단, 2013년 4월 22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2013년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미상각채권에 대하여도 원금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12.28.)(개정 2013.4.22.)(개정 2016. 4. 1.)

6. 심의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기타 지원 방법을 의결할 수 있다.

②보증채권은 채권 원금을 채무관련인 수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제5호의 채무감면 기준을 적용한다.(항 신설 2013.6.10)

③신청일 당시 병역법에 의해 의무복무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예정인자에 대해서는 복무기간동안 상환을 유예하며, 동 기간 경과 후에는 채무상환을 2년까지 유예하되, 매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연장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05.11.11.)

④국가기관 등에서 인정한 사회소외계층에 대하여는 제①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상각채권에 한하여 원금의 9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5.11.11.)(개정 2013.4.22.)(개정 2016. 4. 1.)

⑤대학생 또는 미취업청년에 대해서는 상각채권에 한하여 원금의 6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2012.2.15.)(개정 2015.4.1)

1. 대학생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하되, 졸업 후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매 6개월 단위로 최장 4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신설 2015.4.1)

2. 미취업청년의 경우 매 6개월 단위로 최장 4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신설 2015.4.1)

⑥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도 불구하고 무담보채

권에 대하여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분할상환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1.6.1.)(개정 2013.6.10)(개정 2016. 4. 1.)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채무조정안이 심의위원회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부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5.11.11.)(개정 2011.6.1.)(개정 2013.6.10.)

제12조(지원기준) ①신용회복지원 대상이 되는 채무는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총채무 중 신청서 및 변제계획서 등에 의해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권기관에 대한 채무로 한다. 다만, 각 채권기관에서 신용회복지원이 별도로 이루어지거나 정책자금대출 등과 같이 채권기관에서 자율적인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신용회복지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종류별, 채권기관별로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의 종류, 금액 등에 따라 동일기준으로 조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약식 신용회복지원) ①채무자의 총채무액 중 1/2이상을 보유한 채권기관이 먼저 자체신용회복지원계획에 의한 채무조정을 채무자와 합의한 때(채무자에 대한 자체 신용회복지원에 합의한 두 개 이상 채권기관의 채권합계액이 채무자의 총채무액의 1/2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채권기관이 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채권기관의 신용회복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이에 준하여 채무자의 나머지 채권기관에 대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여 모든 채권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채권기관이 통보를 받은 때에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기관이 서면에 의하여 정당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 및 의결하여 신용회복지원을 확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약식 신용회복지원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권으로서 채무자의 총채무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4장 신용회복지원 등의 효력

제14조(승인조건 등의 이행) ①신용회복지원 승인을 받은 채무자는 승인된 내용에 따라 채무의 변제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필요시 관리계좌를 통하여 채무의 변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각 채권기관에 승인된 조건에 따라 이행을 하여야 한다.

③채권기관은 승인된 조건에 의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며, 담보권을 실행 하거나 채권추심 등을 통하여 회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채권기관이 위 제3항의 규정에 반하여 채무자, 보증인 등에게 채권추심을 하거나 담보권 등을 실행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중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⑤심의위원회는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질병, 재난 기타 긴급비용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제계획 및 신용회복 지원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심의·의결하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변제계획 및 신용회복지원 내용의 변경은 재창업지원위원회가 담당한다.(개정 2012.4.2.)

⑥승인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자가 채무잔액을 일시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채무잔액의 일부를 추가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위원회가 정한다.(신설 2006.9.8.)

⑦ 신용회복지원 승인을 받은 채무자의 담보대출, 보증인부 대출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채권기관에 대한 개별변제를 허용 한다.(항 신설 2013.6.10)

제15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①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승인통지는 채무자 및 그 보증인 등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②신용회복지원신청이 취하, 각하, 기각, 취소되거나 제18조에 의해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채무자 및 보증인 등의 책임은 신청전의 채무 내용대로 회복된다.

제16조(채권의 양도금지) ①채권기관은 제6조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후에 당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회원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에게 양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 협약에 의한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에 의거 협약 미가입 기관에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고, 동 내용을 확약하는 매입기관의 동의서를 위원회 앞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용회복지원 확정자에 대한 협약효력 유지 및 위원회 운영비용분담
2. 제1호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기관으로의 재매각 금지

③제2항의 동의서는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소액채권의 양도) 채권금액이 소액(원금 500만원 이하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인 채권기관은 그 채권을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그 세부기준 및 시행시기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효력의 상실) ①신용회복지원확정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채권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신용회복지원 조건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승인조건에 따라 12회차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채무불이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9.8.)
2.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신용회복지원 승인 신청 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4.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 등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기타 채무자 또는 채권기관의 요청 등에 의해 심의위원회 또는 재창업지원위원회가 효력상실 결정을 하는 경우(개정 2012.4.2.)

②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사유에 의해 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회차의 1/3이상을 납입하고 채권기관이 동의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용회복지원 효력을 부활시킬 수 있다. 이 때 채권기관의 동의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제9조제3항의 "심의위원회의결"은 "위원회의 부활결정"으로 본다(신설 2007.12.28)(개정 2015.4.1.)

제19조(면책) ①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조건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해 채무자의 채권기관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②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조건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미 75% 이상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하여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 채무자는 면책된 것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의 면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증인 등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제20조(제세공과금의 징수유예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을 승인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 등에 세금의 징수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파산신청전의 조정) 회원기관은 채무자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회원기관의 자체 신용회복지원절차에 의한 채무조정이나 본 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신용정보의 관리 등) ①제9조 제3항에 의해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 신용회복지원의 승인내용, 채무상환 정보 등을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5.3.30.)

②채권기관은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자 등으로 신용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제23조(교육 등) ①위원회의 사무부서는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뿐만 아니라 신용관리 및 채무에 대한 상담전문 기관으로서 신용회복지원 신청자와 일반인에 대하여 금융, 신용관리 및 바람직한 경제생활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취업알선 등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삭제)(개정 2012.4.2.)

제23조의2 ~ 5(삭제)(개정 2012.4.2.)

제6장 (삭제)(개정 2015.4.1.)

제23조의6 ~ 10(삭제)(개정 2015.4.1.)

제7장 다중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2009.4.13.)

제23조의11(다중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 연체기간 장기화가 예상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12(신청대상) ①제23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사전채무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2개 이상의 금융기관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총채무액이 15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자(개정 2013.6.10)
2. 금융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신청 전 6개월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100 이하인 자
4. 부채상환비율이 30% 이상인 자
5. 보유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자(개정 2013.6.10)
6. 실업·휴업·폐업·재난·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신설 2013.4.22)

1. 신청 전 1년 이내 누적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자
2. 연간소득액이 40백만원 이하인 자

제23조의13(지원내용) 사전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상환기간연장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최장 10년까지, 담보채권에 대해서는 3년 이내 거치후 최장 2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잔존상환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채권은 당해 채권의 잔존상환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 이자율 조정

제1호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다.

3. 채무감면

채무감면은 연체이자에 한한다.

4. 변제기유예

실업·휴업·폐업·재난 등으로 인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방법으로서는 실질적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장 1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제23조의14(특별규정) 본 장에서 정한 사항은 제1장 내지 제4장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본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장 내지 제4장을 준용한다.

제8장 중소기업인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지원(2010.4.26.)

제23조의15(중소기업인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2.28.)(개정 2012.4.2.)

제23조의16(신청대상) 제23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휴업, 폐업, 채무과다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법인기업(이하 '실패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으로 법인을 경영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경영실권자(이하 '중소기업인'이라 한다.)
(개정 2011.2.28.)(개정 2012.4.2.)
2.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와 주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일 것(개정 2012.2.15.)
3. 삭제(개정 2011.2.28.)

제23조의17(신용회복지원 내용) ①중소기업인에 대한 신용회복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채무감면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2.4.2.)
2. 변제유예
조정된 채무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3년,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매 1년마다 본인의 연장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연장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2.4.2.)
3. 분할상환
조정된 채무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8년간,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하되, 매 1년 단위로 채무자의 여건에 따라 월 변제금을 체증하여 상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2.4.2.)
4. 이자율조정
변제유예기간 동안의 이자는 부리하지 아니하며, 상환기간 중에 단계별 조정이자율을 적용하되, 상환기간 내 조정 후 채무를 전액 상환하는 경우 상환기간 중의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4.2.)

②삭제(개정 2012.4.2.)

제23조의18(특별규정) 본 장에서 정한 사항은 제1장 내지 제4장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본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장 내지 제4장을 준용한다.

제9장 중소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지원(2012.4.2.)

제23조의19(중소기업인의 재창업지원)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경영재기를 위해 신용회복 및 재창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20(신청대상) 제23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폐업, 채무과다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이하 ‘중소기업인’이라 한다.(개정 2016.3.22.))
2.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와 주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일 것.
3. 사업재기를 위한 신설 사업자 및 법인을 설립한자로 재창업지원위원회가 재창업자금 지원결정을 통한 신규자금 조달이 가능한 자
4. 제3조 단서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자.

제23조의21(신용회복지원 내용) ①재창업 중소기업인에 대한 신용회복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채무감면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재창업자금지원에 참여하는 기관이 보유한 채권 중 대지급일 또는 연체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채권의 경우 원금의 최대 75%까지 감면(개정 2016.3.22.)
2. 변제유예

제23조의17제①항제2호를 준용한다.

3. 분할상환

제23조의17제①항제3호를 준용한다.

4. 이자율조정

제23조의17제①항제4호를 준용한다.

②제23조의19의 규정에 의하여 재창업지원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채무자가 재창업지원 승인 당시에 보유한 신설법인의 주식 등 지분 중 1/2이상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3조의19의 규정에 의하여 재창업지원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채무자는 신설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70% 이상, 신설법인의 주식 등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재창업자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정당한 사용계획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의22(재창업자금 지원) ①제23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자가 재창업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사업성평가를 통해 재창업 성공이 가능하다고 재창업지원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재창업자금지원에 참여하는 기관이 공동으로 지원한다.(개정 2016.3.22.)

②제①항의 재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의 지원절차는 재창업 신규 자금 지원기관 및 보증기관과 별도로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③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23조의 21에 따라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제23조의23(특별규정) 본 장에서 정한 사항은 제1장 내지 제4장에 우선 하여 적용하며, 본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장 내지 제4장을 준용한다.

보 칙

제24조(제재금 등) ①회원기관은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7조 제1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및 기타 본 협약 상 의무를 위반한 회원기관에 대하여 총채권액의 5/100 내지 50/100의 범위 내에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회원기관 분담금, 협약준수 의무불이행 회원기관으로부터 징구한 제재금 등은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자금, 위원회 운영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위원회는 본 협약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협약의 개정과 폐지) 본 협약의 개정과 폐지는 위원회 회원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27조(정관과의 관계)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의 정관과 상이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부 칙(2004. 5.20.)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 제2호 라목 내지 마목은 회원기관의 전산시스템이 완료되는 시점을 감안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05.3.30.)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11.)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0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9.8.)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2.)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장은 '06.9.28일 재정경제부 등 13개 부처에서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정부에서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7.12.28.)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0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6.2.)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08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장의 신청기한은 2008년 10월 31일까지로 하며, 국민연금대여금 지급기한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 신청기한 및 국민연금대여금 지급기한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9. 4. 13.)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09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삭제(개정 2012.8.30.)

부 칙(2009. 8. 1.)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 29.)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10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4. 26.)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18.)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10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 25.)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1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5. 30.)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15.)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1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29.)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시행일 이전에 제5장 벤처기업인의 경영재기를 위한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자 및 제8장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통한 신용회복지원자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경우 제9장의 규정으로 신용회복지원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 8. 30.)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1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 17.)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6. 5.)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1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1.)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22.)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16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1.)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 제1항 제5호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